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의 효력

• 김 영 균 •

대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머리말

조정이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서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며, 간이·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정식재판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환영받고 있는 제도이다. 만일 모든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법원으로서도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범람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마비되고 소송지연에 따른 비용과 부담의 증가, 해결 결과의 불만 등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것이다. 오늘날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며, 또한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현실적인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소송의 대안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¹⁾가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조정(민사조정법), 중재(중재법) 등이 있으며, ADR 절차는 비교적 저렴하고 화해나 조정은 상소제도가 없으므로 판결보다는 간이·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엄격한 증거법칙이나 절차규제가 없는 등 간편한 절차로 인하여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해결방법이기 때문에 그 이행이 확실하고 해결내용도 현실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종다양하고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소규모 개인사업의 비중이 큰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조정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가맹사업거래공정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화해, 조정, 중재, 감정 등을 통하여 간이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화에관한법률」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절차에서만 다룰 수 있게 된다.²⁾ 따라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조정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조정조서의 효력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 비교

1. 뉴질랜드

예컨대 뉴질랜드 프랜차이즈 실무규범과 뉴질랜드 프랜차이즈협회의 윤리규범³⁾은 뉴질랜드 프랜차이즈협회(FANZ)의 회원은 프랜차이즈협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⁴⁾ 분쟁당사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협상을 하여야 하고⁵⁾, 당사자간에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분쟁발생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협회는 그 통지를 받은 후 분쟁의 해결이 용이하도록 협조하지만 협회가 스스로 분쟁의 조정자로서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프랜차이즈협약이 체결된 후 또는 협회에 분쟁발생 사실을 통지한 후 21일 이내에 당사자의 협의로 선정한 중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적당한 중재자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시하는 중재자 중에서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중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이상과 같이 뉴질랜드에서는 프랜차이즈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보듯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자가 먼저 자율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

2) 大法 68. 10. 22 선고, 68므 32 판결.

3) 뉴질랜드 프랜차이즈 실무규범과 뉴질랜드 프랜차이즈협회 윤리규범(The Franchising Code of Practice and the Association's Code of Ethics)은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4) 뉴질랜드 The Franchising Code of Practice 8.1.

5) The Franchising Code of Practice 8. 2. 1.

6) The Franchising Code of Practice 8. 2. 3.

7) The Franchising Code of Practice 8. 2. 4.

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자족적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2. 한국법에 대한 시사

프랜차이즈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 또는 정부적 차원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즉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예산을 보조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하는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개인의 사경제활동이며, 그에 따른 분쟁도 오로지 사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분쟁의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법은 풍토적인 것이며, 그 나라의 법적 전통과 국민성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규칙보다는 정서가 앞서고 원칙보다는 융통성을 우선시하는 한국적 풍토하에서 뉴질랜드와 같이 분쟁의 자족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도 이러한 특색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가맹사업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수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상호주의적 양보에 의한 분쟁의 자발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정부는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원조자로서 가맹점이 충분히 궤도에 올라 사업을 성공시킬 때까지 가맹점에 대하여 원조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식이 정착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사업자단체의 역량이 미비하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며 전문성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율적 역량이 향상될 때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해결기구를 유지하고 재정 또는 인력의 지원을 통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정착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에서는 사업자단체⁸⁾의 기능과 역할 및 능력을 확장

8)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자단체는 거의 예외 없이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정부가 하는 각종의 역할을 대신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단체의 재정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업자단체를 업계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가치보다는 업계를 대표하는 소수의 대표자가 사업자단체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활용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시켜 정부가 하고 있는 각종의 기능을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각종의 전문적 업무를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III 분쟁조정협의회의 지위

1.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일반현황

(1) 근거법률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이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2002. 5. 13.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었고, 그시행령이 2002. 11. 6. 대통령령 제17773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의 구성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인은 가맹분부를 대표하고, 3인은 가맹점주를 대표하며, 나머지 3인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사업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와 ①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사업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법 제17조제3항). 그러나 현행법상의 조정위원은 그 요구하는 자격은 충분하나 실행에 있어서 더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쟁조정의 법적 효력이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각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특허법을 포함한 법률가와 경영학, 경제학, 홍보학, 실무가 등을 광범위하게 위촉하여 상식에 입각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배합이 요구된다.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가맹점주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를 대표하여 추천할만한 주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분쟁을 평

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조정제도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정기구가 권위적으로 운영된다거나, 분쟁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운영으로 호를 경우를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보듯이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는 조정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당사자를 도와주는 자”라고 규정한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조정법에서 규정한 “조정”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⁹⁾

2. 분쟁조정협의회의 법적 지위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되고,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고 있으며(가맹사업법 제17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협의회의 직원 인건비와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¹⁰⁾ 즉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¹¹⁾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단체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행정위원회인 것은 분명하나, 그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 분쟁조정위원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고 직원 인건비와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 외에는 행정조직으로 불만한 외형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자문기구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으나, 조정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가맹사업법 제19조제2항),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¹²⁾ 그러므로 가맹사업법이 분쟁조정기구의 명칭을 협의회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입법상의 실수이다. 설령 이 기구를 협의기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거의 모든 협의기구가 정부조직의 내부에 설치하고 있어,¹³⁾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의 일부가 아닌 분쟁조정기구를 협의회라고 호칭하는 것도 일관

9) UNCITRAL Conciliation Rules Article 7(1).

10) 신학용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 11. 18, 4면.

11) 이시운, 민사송법(신3정판), 24면에서는 행정부 산하의 행정위원회형의 조정기구로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법 제45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건설업법 제32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법 제86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제54조의2항) 등을 들고 있다.

12) 각종의 징계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평업조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도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예컨대 가축방역협의회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철도관리운영협의회는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에 의하여 철도정책국에 두고 있다(동 직제규정). 또한 국가정보관리법상의 국가자료관리협의회는 국가정보원에 동 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등도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하고 있다.

성이 결여된다. 대체적으로 분쟁조정기구에 대하여 위원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분쟁조정협의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V. 조정의 효력

일반적으로 조정이라고 함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¹⁴⁾ 현행법상 조정제도는 가사사건에 대한 가사조정(가소 제49조 이하)과 민사조정법에 의한 민사조정이 있다. 또한 행정부 산하의 각종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조정법이 행정조정에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별히 민사조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민사조정법을 적용하여도 좋을 것으로 본다. 이는 특히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 분쟁조정기관(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중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의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하 “조정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이 규칙은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외에도 위의 명칭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된 조정조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조정조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조정조서의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만약에 가맹사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결정이 민사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조정조서로 할 것이 아니라 「합의서」 혹은 그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이란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조서와 동일한 내

14) 이시윤, 전거서, 22면.

용, 즉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맹사업분쟁 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효력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다고 하여야 맞다.

V.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분쟁조정협의회의 독립성·공정성 문제

현행 가맹사업법은 제16조제1항에서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조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며,¹⁵⁾ 분쟁조정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프랜차이즈협회장의 결재권이 프랜차이즈협회의 장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도 독립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¹⁶⁾ 앞의 머릿글에서 지적하였듯이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산업이나 업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케팅 방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와 업종에 걸쳐 이용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주로 외식업 등의 지극히 특정된 업종만을 포섭하는 단체에 불과한데 정부가 입법을 통하여 일부 단체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분쟁조정 업무를 맡길 경우 외식업 이외의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나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장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방법과¹⁷⁾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⁸⁾

15) 양정록, 서울경제신문, 1924. 11. 3.

16) 신학용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 11. 18, 5면.

17) 중앙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업법 제69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오염분쟁조정법 제2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제54조제2항) 등이 있고, 독립기구를 설치한 경우로는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저작권법 제86조) 등이 있다.

2. 조정위원의 전문성제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조정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더 전문화된 위원들이 조정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업무는 당사자간의 법률적 다툼이 대부분이고 재판에 갈음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상법 전공교수, 관련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등의 수를 늘려 조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정위원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또는 가맹본부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문 또는 고문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학 교수나 특허법 전문가, 광고전문가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제도화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에 총 243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었고, 139건이 조정이 되었으며, 75건이 불성립되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월 1회 개최된 점을 감안할 때 월 평균 20.25건을 조정한 셈이 된다.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업무를 개시한 이후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분쟁조정회의가 개최하여 왔으며, 대체적으로 오후 8시 이후에 조정회의가 종료되고 있어 매월 분쟁조정회의의 평균 시간은 4시간 정도가 된다. 회의는 4시간 동안 20.25건을 조정함으로써 시간당 5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 시간은 한 개의 문건을 읽고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분쟁조정 총실을 기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전원회의 체제를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원회의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사무국 보강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래 2003년도에 접수된 243건의 신청사건을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1개월 동안 20.25건의 분쟁사건을 당사자를 면담하여 조사하고, 실질답사하며, 관련판례 또는 자료를 조사하여 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물론 이들의 사무집행 과정에는 전화상담 등에 하루일과중 상당시간을 할애하는 외에도 당사자의 면담 및 조

18) 어떤 방식이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사, 실지 답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업무가 터무니없이 과다하여 부실한 조정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준다.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이들 본연의 업무 외에도 프랜차이즈협회와의 업무협조문제 및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수행 등에 따르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석사학위 소지자 1명, 학사학위 소지자가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권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과다에 따른 조정지연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과다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상근위원 위촉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채택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그 폭과 분야를 확장하면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도 그에 걸맞는 조직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행의 비상근조정위원은 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조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근위원의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상근으로 위촉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산하의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기구들 중에서 비교적 분쟁조정 사건처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는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상근조정위원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6. 조정수수료 부과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가맹사업의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간적 입장에 있는 협의회가 조정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분쟁당사자가 최대의 수혜자인 셈이다. 또한 개인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조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현행법상 조정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무조건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 맺는말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각국의 정책의 일환으로서 프랜차이즈 관련 입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에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중요한 골격 중에서도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의 분쟁에 대한 자율적으로 평화적인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조정이 신속하고 평화적이며 저비용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효율적이라는 시대적 추세를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줄속이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 당시에 당연히 예상된 것이지만, 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사정변경이나 입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노정(露呈)된 것으로서 충분히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법 개정시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비된 프랜차이즈 법률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경정저널**